

제조·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

제정	1991. 8. 9	환경부고시	제1991-44호
개정	1993. 7. 1	환경부고시	제1993-49호
개정	1996. 6. 1	환경부고시	제1996-75호
전문개정	1998. 5.15	환경부고시	제1998-51호
전문개정	1999. 9. 8	환경부고시	제1999-141호
개정	2000.12.29	환경부고시	제2000-154호
개정	2002. 4.26	환경부고시	제2002-67호
개정	2003. 9.16	환경부고시	제2003-163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지화학물질)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은 별표1과 같다.

제3조(취급제한유독물)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 유독물은 별표2와 같다.

부 칙(1991. 8. 9)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고시의 폐지) 취급제한유해성독극물지정(환경처고시 제86-10호, '86. 6. 11 및 환경처고시 제89-9호, '89. 9. 11)은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·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(1993. 7. 1)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·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(1996. 6. 1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8. 5.15)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고시의 폐지)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유독물(환경부고시 제1996-75호, '96. 6. 1)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1999. 9. 8)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로이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(2000.12.29)

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4.26)

(시행일)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9.16)

(시행일) 이 고시는 200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제조·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는화학물질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명칭
99-4-1	니트로펜[Nitrofen; 1836-75-5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	다이알리포스[Dialifos; 10311-84-9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	디디티[DDT; 50-29-3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	디메토에이트[Dimethoate; 60-51-5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5	디술포톤[Disulfoton; 298-04-4] 및 이를 5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6	디엘드린[Dieldrin; 60-57-1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7	렙토포스[Leptophos; 21609-90-5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8	메타아미도포스[Methamidophos; 10265-92-6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9	모노크로토포스[Monocrotophos; 6923-22-4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0	벤지딘[Benzidine; 92-87-5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1	비산 납[Lead arsenate; 7784-40-9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2	비스(2-클로로에틸)에테르[Bis(2-chloroethyl)ether; 111-44-4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3	비스(클로로메틸)에테르[Bis(chloromethyl)ether; 542-88-1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4	스트리시닌[Strychnine; 57-24-9]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5	아세트산 탈륨[Thallium acetate; 563-68-8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6	아세트산 페닐수은[Phenylmercury acetate; 62-38-4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7	아크린아트린[Acrinathrin; 101007-06-1] 및 이를 25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18	안투[Antu; 86-88-4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
(계 속)

고유번호	화 학 물 질 의 명 칭
99-4-19	알드린[Aldrin; 309-00-2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0	알디카프[Aldicarb; 116-06-3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1	엔도술판[Endosulfan; 115-29-7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2	엔드린[Endrin; 72-20-8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3	이소벤잔[Isobenzan; 297-78-9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4	인화 알루미늄[Aluminium phosphide; 20859-73-8]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5	질산 탈륨[Thallium nitrate; 10102-45-1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6	캄페클로르[Camphechlor; 8001-35-2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7	캡타폴[Captafol; 2425-06-1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8	캡탄[Captan; 133-06-2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29	클로로벤질레이트[Chlorobenzilate; 510-15-6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0	클로로피크린[Chloropicrin; 76-06-2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1	클로르단[Chlordan; 57-74-9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2	클로르디메폼[Chlordimeform; 6164-98-3]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3	트리스(2,3-디브로모프로필)포스페이트[Tris(2,3-dibromopropyl)phosphate; 126-72-7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4	트리플루라린[Trifluralin; 1582-09-8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5	파라콰트 염류[Paraquat, salts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6	파라티온-메틸[Parathion-methyl; 298-00-0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7	파라티온[Parathion; 56-38-2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38	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[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
(계 속)

고유번호	화 학 물 질 의 명 칭
99-4-39	펜타클로로페놀[Pentachlorophenol; 87-86-5]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0	펜피록시메이트[Fenpyroximate; 134098-61-6] 및 이를 25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1	포스파미돈[Phosphamidon; 13171-21-6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2	플루아지남[Fluazinam; 79622-59-6] 및 이를 25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3	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[Fluoroacetamide; 640-19-7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4	피라클로포스[Pyraclufos; 89784-60-1] 및 이를 25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5	피리미닐[Pyriminil; 53558-25-1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6	피비비[PBBs; 59536-65-1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7	피시비[PCBs; 1336-36-3] 및 이를 0.005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. 다만,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
99-4-48	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[HCH; 608-73-1] 및 이를 15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49	헵타클로르[Heptachlor; 76-44-8] 및 이를 6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50	황산 탈륨[Thallium sulfate; 7446-18-6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51	2-나프틸아민[2-Naphthylamine; 91-59-8]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52	1,2-디브로모에탄[1,2-Dibromoethane; 106-93-4] 및 이를 50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53	1,2-디브로모-3-클로로프로판[1,2-Dibromo-3-chloropropane; 96-12-8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54	4-아미노비페닐[4-Aminobiphenyl; 92-67-1]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99-4-55	2,4,5-티[2,4,5-T; 93-76-5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

[별표 2]

제조·수입또는사용을제한하는취급제한유독물

고유번호	취급제한유독물의 명칭	제한내용
99-5-1	브롬화 메틸[Methyl bromide; 74-83-9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	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
99-5-2	사염화 탄소[Carbon tetrachloride; 56-23-5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	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
99-5-3	수산화 트리알킬주석[Trialkyl tin hydroxide]과 그 염류(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)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(tributyltin compound), 또는 그 중 하나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	<p>1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.</p> <p>가. $\frac{2}{(\quad \cdot)} \quad 2$</p> <p>나.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, 어망, 어구의 방오도료용</p> <p>다.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</p> <p>라. 냉각수살균제용</p>
99-5-4	오산화 비소[Arsenic pentoxide; 1303-28-2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질	산림법에 의한 목재의 방부·방충처리를 제외한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